

---

# 202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선정·추진 계획

---

2024. 8.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1

## 사업목적 및 개요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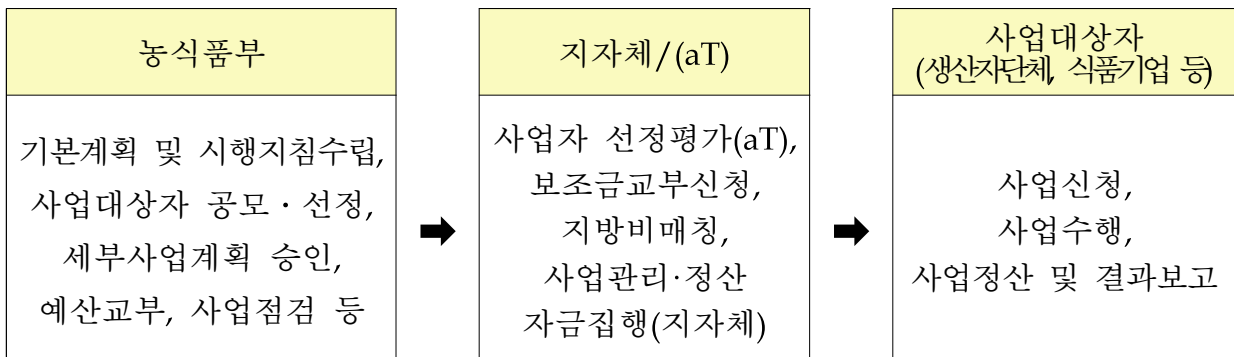
-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개념 : <붙임1> 참조

- 식품산업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식품소재 분야 선도 중소 식품기업 육성 및 국산 식품소재 고부가가치화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사업의 실질행를 제고를 위해 '25년부터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 지원한도는 개소당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사업추진절차



□ '25년 선정규모(안) : 국고기준 1,536백만원(8개소 내외)

- '25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25. 306백만원, '26. 1,230백만원)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유통정책과 총괄)의 내역사업으로 포함

○ 개소당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00%)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기준 사업비	700	210	210	280
최대 사업비	1,500	450	450	600

\* '25년 확정된 예산, 사업신청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조정의견 등에 따라 지원업체 수 및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비 사용용도

○ 설계, 감리, 건축공사, 선별·포장·가공·유통장비 등 식품소재 생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 건축공사 시 생산·유통·상품화 연구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기숙사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사업대상자 (붙임4)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식품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지원 제외

##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방비(매칭 사업비) 본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조속한 사업 대상자 가선정·통보 필요

### ① 사업 시행지침 시달 및 '25년 사업 신청 공고(8월 중순)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 ② 사업신청서 제출(8월 중순 ~ 9월 초)

- 제출단계 : 사업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 확인서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 지자체 사전평가 체계 구축 및 지역 형평성을 위해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 4개소, 광역시(제주 포함) 3개소(세종 2개소) 이내 신청 제한

### ③ 서면평가(9월 중순)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 이내

-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④ 현장확인(9월 말 ~ 10월 초)

- 발표평가 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및 사업성 검토 등 사업여건 현장확인 실시

\* 개소당 선정위원회 위원 2명이 참여, 현장확인 결과는 발표평가에 활용

\*\* 현장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내용이 다른 경우 서면평가 결과 수정 가능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발표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⑤ 발표평가(10월 중순)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대상자 역량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

⑥ 사업대상자 가선정(10월 중순)

- 서면평가 점수(60%)와 발표평가 점수(40%)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가선정

\* '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사업대상자 가선정(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 예산 확정 후 최종 확정 통보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⑦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25.1월)

- '25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개소·사업비 조정 후 최종 확정 통보

□ 선정평가 및 선정 제외기준

- 선정평가 심사표 : <붙임2> 참조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우대
  - 농업관측 결과 등을 활용하여 수급 불안 품목 우대 가능
- 사업자 선정 이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 다음 연도부터 3~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신청자 3년, 해당 시·군·구 5년)

□ 선정 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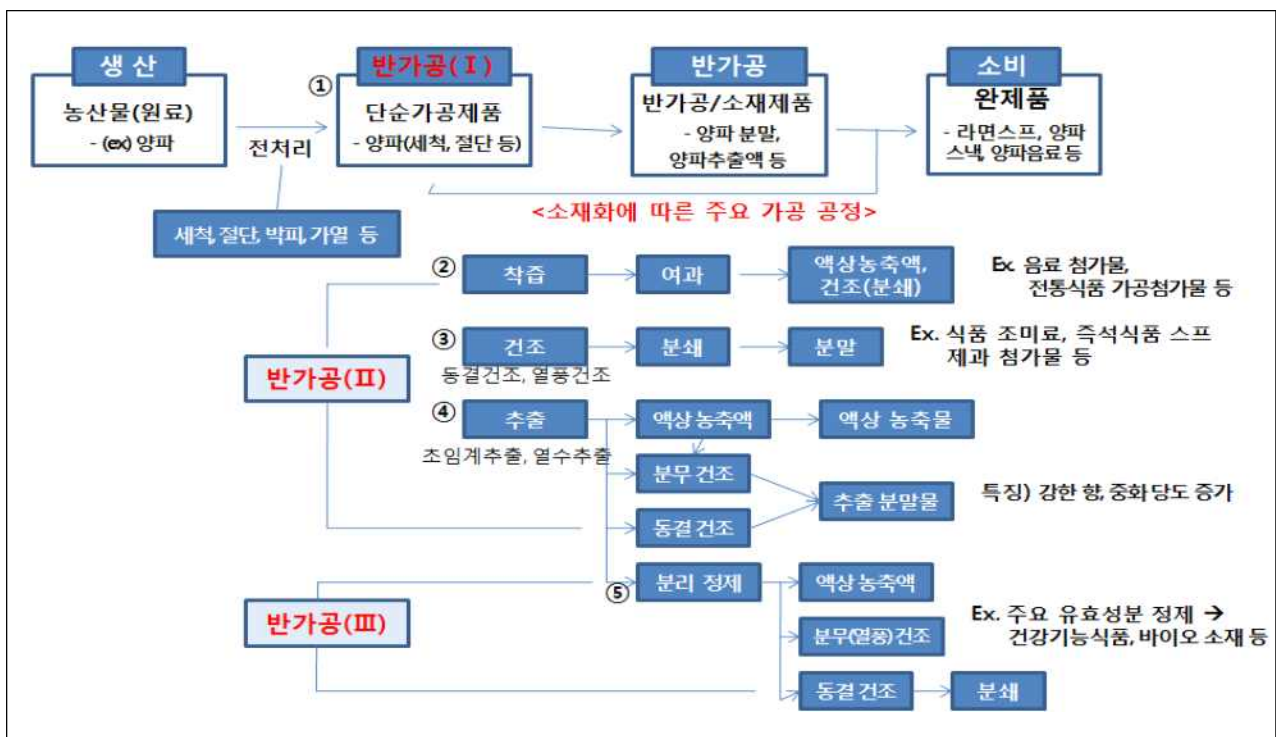
- 이행점검 : 연 2회 이상 집행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현장점검 실시
-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5년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관리
- 수요조사 : '25년 4~6월에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붙임4) 참조

- 사업신청 기간: '24. 8. 13. ~ 9. 4.
- 요건검토 및 자체평가(지자체) : '24.9.6.~9.13.
  - 사업계획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24.9.13.까지
  - ※ 제출기한 경과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엄수 요망
- 선정평가
  - 서면평가 : '24.9.13.~9.24.
  - 현장확인 : '24.9.24.~10.4.
  - 발표평가 : '24.10.10.~10.11.(잠정)
- 평가 결과
  - 가선정 통보 : '24.10.16.(잠정)
    - 가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수정 및 지자체 매칭사업비의 본예산 반영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5년 예산 확정 후
    - '25년 확정예산 및 지자체 본예산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선정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 지원시설·장비 운영실태 및 지원 전후 업체 운영 변동사항 (매출액, 고용인원, 영업이익 등) 조사

# 붙임1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i)식자재형, ii) 농축·분말형(범용소재), iii)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 무안 FND(곡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붙임2**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척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 (1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5) - 현재사업 및 사업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분야(개념 및 유형) 해당 여부	5	4	3	2	1	
	○ 주요품목 반가공 여부(5)	5	4	3	2	1	
	○ 유통경로 적정성(5) - 주 판매(납품)처가 완제품제조업체, 식품조리 업체에 해당 여부(5)	5	4	3	2	1	
2. 농업생산과의 연계성(60점)	○ 국산원료 사용 실적(40) - 국산원료 구매액(25) - 국산원료 구매 증가율(15)	25	20	15	10	5	
	○ 계약재배 및 농가 조직화 실적(20) - 계약재배 면적(10) - 전년 대비 계약재배 증가율(5) - 계약재배 생산농가 참여수(5)	10	8	6	4	2	
		5	4	3	2	1	
		5	4	3	2	1	
3. 시설설치 적정성 및 전문화(15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 적정성(10) - 사업추진 필요성 및 기존시설과 연계성(5) - 시설·장비 설치내역, 단가, 활용방안 적정성(5)	5	4	3	2	1	
		5	4	3	2	1	
	○ 전문화 가능성(5) - 최근 2년 교육, 컨설팅 및 인증 실적(5)	5	4	3	2	1	
4. 경영능력(10점)	○ 최근 2년 경영실적(10) - 매출액 증가율(5) - 영업이익 증가율(5)	5	4	3	2	1	
		5	4	3	2	1	
※ 가점(+10점)	○ 생산농가-소재업체-식품기업간 공동협력(5) - 상생협력 MOU 구축 및 이행실적 확인 ○ 푸드플랜 및 지역먹거리 패키지 지원 포함, 또는 농촌협약 시군(5)						
※ 감점(-2~3점)	○ 지자체 사후관리 및 관심도 - 최근 3년 내 선정 이후 사업포기, 재이월						
<b>총 점</b>							



### <계량부분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60)	국산 농산물 구매액 국산 농산물 구매 증가율	A	상위 10%
		B	11% ~ 30%
		C	31% ~ 50%
		D	51% ~ 70%
		E	71% ~
	계약재배 면적 증가율, 생산농가 참여수	A	상위 10%
		B	11% ~ 30%
		C	31% ~ 50%
		D	51% ~ 70%
		E	71% ~
경영 능력(10)	매출액 증가율	A	상위 10%
		B	11% ~ 30%
		C	31% ~ 50%
		D	51% ~ 70%
		E	71% ~
	영업이익 증가율	A	상위 10%
		B	11% ~ 30%
		C	31% ~ 50%
		D	51% ~ 70%
		E	71% ~

**붙임3****사업대상자 발표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척도					점수
		A	B	C	D	E	
1. 사업이해도 (5점)	○ 신청업체 기본현황 및 추진역량 - 기본현황, 가공유형, 주요 생산품목, 출하처 (유통경로), 경영실적, 그동안 추진성과 등	5	4	3	2	1	
2. 사업계획 타당성(20)	○ 식품소재·반가공 사업추진 필요성 ○ 지방비, 자부담, 부지확보 여부 및 방안 ○ 반가공 생산·유통·마케팅 계획 ○ 농업생산과 연계 강화 방안 ○ 운영비 및 인력확보 계획	20	15	10	5	2	
3. 시설·장비 설치 적정성 및 발전 가능성 (15점)	○ 시설·장비 설치 적정성 -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 시설·장비 설치내역, 소요단가, 계약 및 시공 설치 방법, 추진공정, 활용계획 등 적정성 ○ 사업시행 후 전망 / 기대효과	15	12	9	6	3	
<b>소 계</b>							
서류평가 (60)	서류평가 × 60%						
<b>합계</b>							

**2. 종합의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과 장 김영수 사무관 이창은	044-201-2111 044-201-2125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개념 : 덧붙임1 참조

###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및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II.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sup>1)</sup>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sup>1)</su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식품기업**(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산업분류	세분류
일반식품 소재(19)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1),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9), 과일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2),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09), 동물성 유지 제조업(10401),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10403),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 곡물 제분업(10612),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619),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620), 설탕 제조업(10720),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장류 제조업(10743),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9), 맥아 및 맥주 제조업(11112), 주정 제조업(11121), 기타발효주 제조업(11119)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10795),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749)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 (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은 지원 제외

○ **지역 푸드플랜 운영·참여기관**(지자체 출연기관,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농식품부와 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 중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이하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 식품기업은 가, 나, 라, 마 항목 적용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단, 자기자본 선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 사업부지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에 재산권 제약이 있는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해제 증빙자료 미제출 시 사업 포기로 간주
- \*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은 협의하여 연장 가능

### ○ 농업경영정보 등록

-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 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63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 2.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단체
-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4.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 ⑨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사업 선정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없이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 전 이행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반가공 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 시 준수사항은 [덧붙임6] 참고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한 경우 및 지역 푸드플랜 운영참여기관의 경우 신축 가능 (이외에는 신축 불가)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합기, 제합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절단 등), 반가공시설(농축, 분말, 추출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팰릿, 운반상자, 지게차 등
    - \*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등
  - 회계검사비
    -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 시설구축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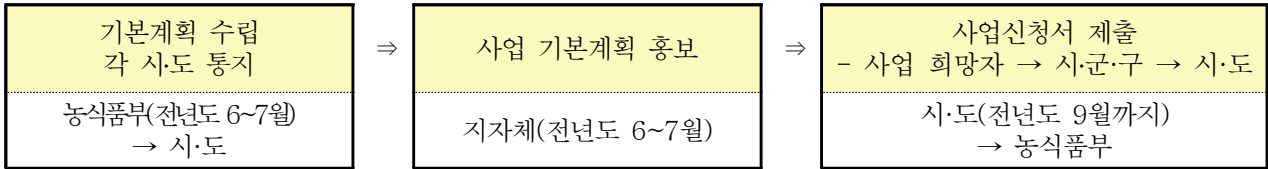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형태 :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년(지원예산 1년차 20%, 2년차 80%)

## 6.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서 작성(덧붙임2~4)

##### 시·군·구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요건확인서(덧붙임5)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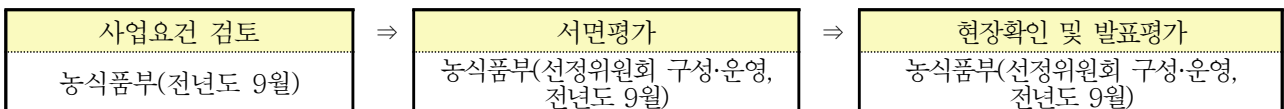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시·도로 사업신청 시 제외

##### 시·도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검토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로 사업신청 시 제외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 시·도

- 사업여건 현장확인 참여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소별 사업비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25년 사업신청 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 <서면평가>
      -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사업여건 현장확인>
      -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
    - <발표평가>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
- ① 발표평가 점수
  - ② 서면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항목 순서가 앞선 항목 우선)
  - ③ 국산 농산물 사용액(직전 3개년 평균, 업력 3년 미만 시 해당 업력 평균)
    - \* 필요시 추가 평가 진행
- ⑤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조건부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된 경우, 사업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우대>

- 농업관측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하는 등 우대 가능

### 3. 자금배정단계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 신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 기본규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6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기본규정 제61조제5항에 따라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삭감

#### 4. 사업시행단계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비의 1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회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10%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 사업비의 10%이상, 3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비의 30%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구→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연 1회 이상)

####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 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 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 \* 건물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동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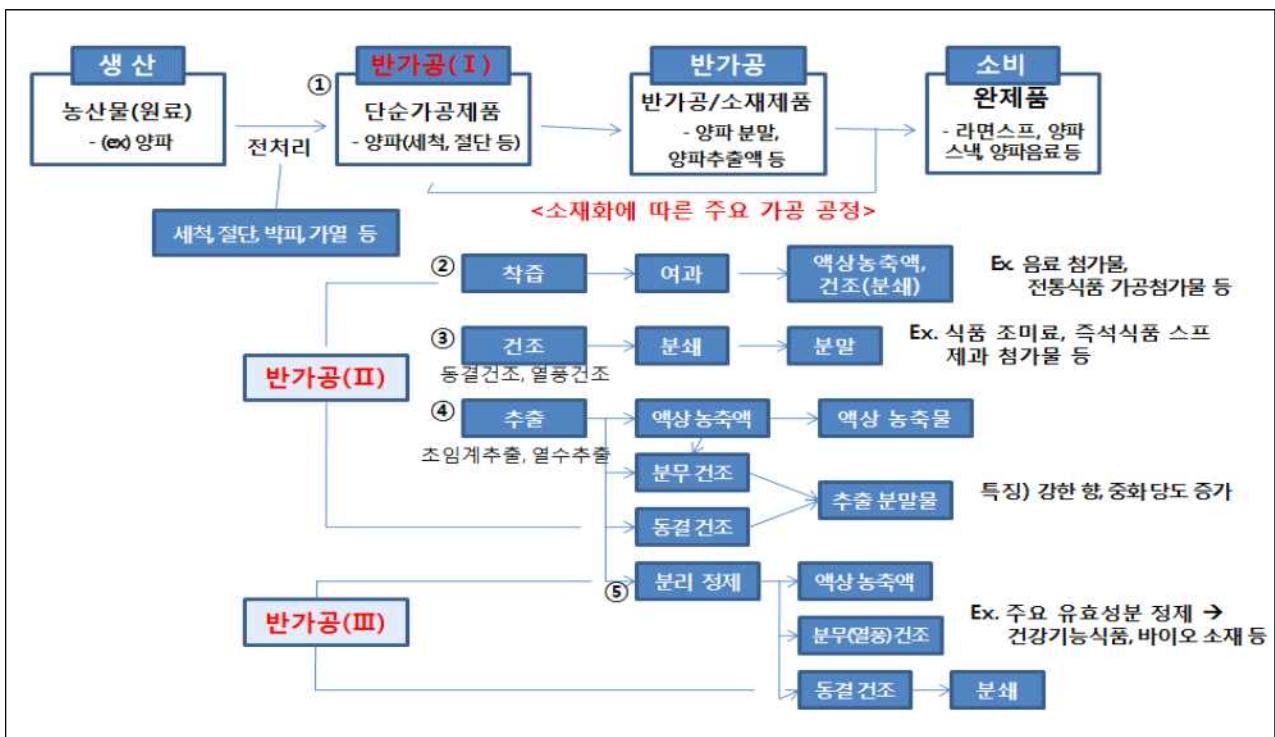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24년 4~6월

###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4년 8~10월
  - 2025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25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 식품소재 · 반가공 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i)식자재형, ii) 농축·분말형(범용소재), iii)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 무안 FND(곡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 →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덧붙임 3]

##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 1. 사업 신청자 현황

#### 가. 일반현황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사업개시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법인형태		법인설립일	
가공유형		원료(품목)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 다. 재정현황('24.6월말 기준)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활용

(단위 : 백만원)

자본총계 (C=A-B)	자산총계(A=a+b)			부채총계(B)	부채비율(B/C)
	계	동산(a)	부동산(b)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 라. 원료조달 및 사용(구입) 현황

(단위 : ha, 호, 톤, 백만원)

구 분	계	직접생산	계약재배	일반구입	외국산
2021		ha ( 톤 / 백만원)	00ha / 00농가 ( 톤 /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2022					
2023					

\* 관련 증빙자료 제출



마. 식품소재·반가공 시설장비 보유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장비 현황(총괄)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동( m <sup>2</sup> )	○동( m <sup>2</sup> )	○동( m <sup>2</sup> )	○동( m <sup>2</sup> )	○동( m <sup>2</sup> )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17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20년	톤, kl 등 기재	톤, kl 등 기재	톤, kl 등 기재	톤, kl 등 기재
	'21년				
	'22년				
	'23년				
	평균				

- 시설·장비 세부내역

분류	시설장비명	수량(동, 개, 식)	규격(m <sup>2</sup> )	주요용도	비 고
건축				가공건물	
기계장비				세척, 절단	
				건조분쇄	

바. 사업추진 현황

- 주요출하처 및 판매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 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21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개소				

[2022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개소				

[2023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개소				

[2024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개소				

○ 유통경로별 납품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유통경로별 납품(매출)실적 및 비중									
	계	학교 급식	군납	식자재업체	B2B (기공업체 식품기업)	온라인 쇼핑몰	작거래	자사 홈페이지	수출	기타
2021	0000 ( %)	( %)	( %)	( %)	( %)	( %)	( %)	( %)	( %)	( %)
2022										
2023										

\* 유통경로별 납품현황 합산 실적과 = 주요 출하처 판매실적 / 합산금액 같게 작성

\* 기타 내역 제시

○ 경영실적 \* 현장점검 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1. 매출액			
1) 반가공 매출			
2) 완제품 매출			
3) 기타 매출			
2. 매출원가			
3. 판매비 및 관리비			
4. 영업이익			
5. 영업외수익			
6. 영업외비용			
7. 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되, 관련 증빙자료 제시

사. 식품품질위생 역량제고 실적

(단위 : 명, 회, 건)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교육			
컨설팅			
인증실적			

\* 해당 실적 증빙자료 제시

2. 사업추진 여건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식품소재·반가공산업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 식품소재·반가공 기반확충 필요성
  -

### 3.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계획

#### 가. 비전 및 목표

- 
- 

#### 나. 추진전략

-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신규판로 확충 계획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농업생산과 연계 강화 전략

#### 다.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준비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가공유형 및 주요품목 :
- 설치내용(사업비 사용내역)

##### ① 시설건축(증개축)

(단위 : m<sup>2</sup>, 개소, 천원)

구축 시설명	사업량 (규격)	단 가	소요 사업비	주요용도	건축유형
	1 (m <sup>2</sup> , 개소)	000	000		증축 또는 개축 구분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증축, 개축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산출내역 별첨 제시

-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

- 설치 후 기대효과

② 기계장비 설치

(단위 : 천원)

기계장비명	사업량 (단위)	구분(용도)	주요 사용품목	단 가	사업비	비 고
예) 탈피기	식, 개소	00품목 (탈피)	000품목, 000품목	000	000	
0000				000	000	
0000		포장설비 (제품포장)		000	000	

\* 산출내역(견적서, 설계서 등) 증빙 제출

- 기존 시설, 기계장비 등과의 연계성 :
- 설치 후 기대효과 :

라. 추진방법(공정 및 제품생산 흐름 및 개념 등)

- 부지확보, 인허가, 계약, 착수·완료 / 방법 및 시기 등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 제품생산 흐름 및 시설설치 개념도(분량 3페이지 이내)

\* 원료구입부터 소재·반가공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과정을 모식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후 동 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그림 사용)

\*\* 사업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시설 설치자금(2025년)

- 
-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2) 운영자금(원료조달 등) 확보(2025년 또는 2026년)

- 
-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 4.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제품명)	매출액 (백만원)	판매물량 (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6월)			
2024년(7~12월)			
2025년			
2028년			
2030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 원료사용 현황 및 계획

구 분	생산 품목	사용 원료	원료사용현황 및 계획					해당지역 (시·군)의 해당원료 생산량(톤)(B)	지역생산량 대비 해당업체의 원료사용비율(%) (A/B)
			국내산(톤/백만원)				외국산 (톤/백만 원)		
			계 (톤/백만 원) (A)	직접 생산	계약 재배	일반 구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6월)									
2024년(7~12월)									
2025년									
2028년									
2030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원료 사용실적(계약재배, 국산농산물 등) 증빙 및 계획을 입증할 자료 등 제출

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덧붙임4) 제출*

6. 기타 자료

*※ 현재 시설장비 현황 사진, 반가공 제품 종류별 사진 자료 제출*

*※ 생산농가, 당사, 납품기업간 상생협력 MOU 및 푸드플랜 및 지역먹거리 패키지 등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실적이 있을 경우 제출*

*※ 사업추진 우수, 성공사례, 지역 농업농촌과 함께한 연계협력 사례 등이 있을 경우 제출*



[덧붙임 4]

##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 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 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확보 (가능)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확인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일정포함) 등) 농식품부 제출
	③ 사업부지확보		농업법인의 경우 재산권 제약 준수 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또는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 여부 등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여부		
	③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여부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대기업 해당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여부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확인자) 소속(시·군·구)

성명

서명

(검토자) 소속(시·도)

성명

서명

##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 시 준수사항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text{kg/m}^3 \sim 42\text{kg/m}^3$ 이고  $0.021\text{W/m}\cdot\text{K}$ 이하로서 공인검사인 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 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冷橋]) 부분 등)이 없게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시공
- ※ 패널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 $\lambda$ 값) $=0.021\text{W/m}\cdot\text{K}$ 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통과율( $k$ 값)  $0.21\text{W/m}^2\cdot\text{K}$ (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장	바닥	간벽	비 고
경질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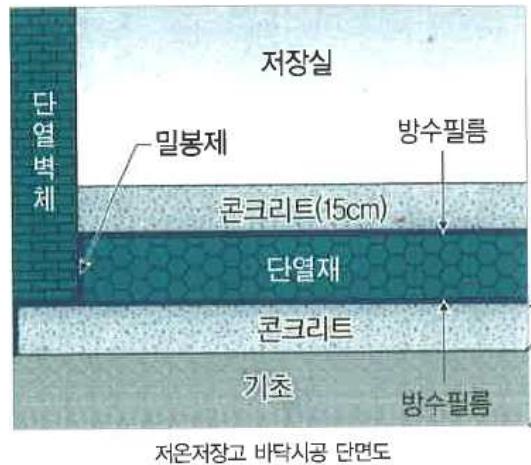
\* 천장단열패널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0m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깔 다음에 가급적 철근 배근

후 150mm(200mm 권장)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냉동패널을 시공한다.



###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 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W) + 냉동기 동력부하(W), Fan Control 스텝 또는 스피드 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 ~ 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Delta t$ ,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Delta t$  5°C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 (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C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Delta t$  7~10°C, 증발온도는 -10~-15°C로 설계. 대수평균 온도차  $\Delta t_m = 8.41^\circ\text{C}$  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Delta t$ 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쿨러의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 쿨러의 규격(전열면적,  $\Delta t$ ,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밸브를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7. 냉매 : 가급적 HFC(수소불화탄소)계(R-507a, R-404a, R-407c 등) 및 대체(HFO, R-600a, 천연 등) 냉매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0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온도센서는 시운전 시 반드시 "0점 조정"을 실시한다.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컴퓨터 중앙관제시스템 및 사용자 문자서비스 적용 권장)

##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덧붙임 7]

## 신청업체 전경 및 생산품 사진

기업 전경 1	기업 전경 2
공장 전경	공장 내부
생산품1	생산품2